

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(서천)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1792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지방 폐교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농촌체험 등 자연 친화적인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2에 의하여 조성된 서울캠핑장을 그동안 서울시가 운영하였으나, 캠핑장 업무 프로세스 다변화, 지역 문화와 자원을 연계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활용 및 전문적인 운영으로 전환하고자 함
- 나.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,
- 다. 민간부문 전문성 활용과 서천 지역특성을 최대로 끌어올려 캠핑장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에 서천 서울캠핑장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,3,4 및 부칙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캠핑장(서천) 운영 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2(시장의 책무) 및 제8조(위탁운영 등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제2,3,4호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3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캠핑장은 지방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로서, 시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여가공간 제공과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가족단위 캠핑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,
- 주말 가족 캠핑뿐만 아니라 학교, 기업, 외국인 등 단체 캠핑 활성화로 주중 이용률 향상을 통해 효율성 향상이 현저히 요구됨
- 이에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
- 따라서 지역 실정과 특성에 따른 시설 운영, 다양한 이용객 수요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 발굴·운영, 노후 시설 관리 및 캠핑장 운영 관련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
※ 시설 운영 관리비는 예산 지원, 이용료 수익은 세입처리

다. 위탁 내용

○ 위탁 사무

- 캠핑장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시설물 유지관리 (캠핑장 관리자 3명)
 - ▶ 관리자 임용관리, 각종 소모품 구입관리, 공공요금, 시설물 유지보수 등

- 캠핑장 및 이용객 안전관리, 예약 및 민원 응대
- 서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자원 연계,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발굴·운영
 - ▶ 운동장과 교사동이 없으나, 농촌체험 및 국립생태원, 장항스카이워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, 관광 발굴 및 운영
- 가족 캠핑뿐만 아니라 학교, 지역축제, 기업연수, 외국인 단체 체험 등 주중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다양화
 - ▶ 이용객 수요에 부응한 프로그램 발굴·운영
 - ▶ 캠핑장 주변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 발굴·운영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(서천 서울캠핑장)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옥도로498번길 43-10
- 개장일자 : '17.04.29 (준공일자 : '16.11.26.)
- 시설규모 : 부지 $3,477 m^2$, 건축물 $603 m^2$
- 지원시설 : 관리실건물(관리실, 화장실, 샤워실), 데크 15개, 야영장
- 이용대상 : 가족단위 시민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 기간 : 2년 (2021.1.1. ~ 2022.12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경쟁

- 캠핑 시설 및 예약, 운영 관련 민간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능률성과 전문성, 지역 주민 협업을 기반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한 신규 수탁기관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152백만원('21년)
- 산출근거
 - 인건비 88백만원, 물건비 42백만원, 경상이전 16백만원, 자본지출 6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

- 2020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2(시장의 책무)

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자연체험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-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(위탁운영 등)

① 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투자·출연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.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본예산 편성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※ 작성자 : 교육정책과 교육시설지원팀 서광자 (☎2133-3923)